

공 고

「주민등록법 제24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「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」 및 「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대상자

연번	대상자성명	생년월일	발급기간	사유
1	윤*민	2008.05.23.	2025.06.01.~2026.05.31.	폐문부재
2	현*원	2008.05.16.	2025.06.01.~2026.05.31.	폐문부재
3	김*채	2008.05.10.	2025.06.01.~2026.05.31.	폐문부재
4	김*울	2008.05.29.	2025.06.01.~2026.05.31.	폐문부재
5	전*성	2008.05.10.	2025.06.01.~2026.05.31.	폐문부재
6	최*아	2008.05.02.	2025.06.01.~2026.05.31.	폐문부재
7	임*경	2008.05.01.	2025.06.01.~2026.05.31.	폐문부재
8	문*원	2008.05.18.	2025.06.01.~2026.05.31.	폐문부재
9	황*서	2008.05.23.	2025.06.01.~2026.05.31.	폐문부재
10	이*주	2008.05.06.	2025.06.01.~2026.05.31.	폐문부재
11	마*희	2008.05.02.	2025.06.01.~2026.05.31.	폐문부재

2. 공고기간: 2025. 5. 16.(목) ~ 6. 5.(목) 【20일】

3. 유의사항: 발급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됩니다.

4. 문의사항: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(☎031-5189-4525)

2025. 5. 16
화성시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
병점1동장 동정인